

제안요청서

과업명	철도사고조사 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용역
주관기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2022. 6.

담 당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공업사무관 박정규	☎ 044-201-5429	Fax:044-868-2407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주무관 이서영	☎ 044-201-5443	

목 차

I. 용역의 개요	3
II. 제안 요청내용	6
III. 참가자격 및 계약방법 등	32
IV. 업체 선정방법	33
V. 입찰자 유의사항	39
VI. 기타사항	43
VII. 제안서 작성요령	44

[불임]

1. 서식일람	52
---------------	----

I. 용역의 개요

1. 추진배경

- 우리 위원회는 사고조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철도사고조사 관리 시스템」을 운영중('18~)으로, 운영상 미비점 및 추가 보완사항* 개선필요
- * 조사관 교육이력 및 안전권고 관리 기능 보완, 불필요한 메뉴 통폐합 등

2. 과업의 목적

- 철도사고조사 관리시스템 활용도를 높여, 철도사고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련 조사내용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 사용자 권한그룹에 따른 메인 페이지 설정 등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시스템 개선으로 사고조사업무의 효율성 증대 기여

3. 과업명 : 철도사고조사 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용역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까지(90일)

5. 예산 : 4,000 만원(총액입찰, 부가세 포함,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6. 입찰 및 계약방식

- 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 제안서는 온라인 제출방식(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출)

- 3 -

7. 주요 과업내용

- 철도사고조사관 이력, 인수인계 및 교육훈련기록 관리 기능 추가
 - 조사관 임용·보직일자 등 이력관리와 퇴직 등 인사이동 발생시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분야별 업무 게시판 등 추가
 - 현재 개별 작성·관리중인 초기교육 등 필수·선택 교육훈련기록 및 철도 관련 주제발표 등 사고조사 역량관리 기능 시스템 추가
- 안전권고 관리 기능 개선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서식에 맞춰 출력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시스템과 별도로 대장을 작성하는 이중업무 개선
 - 안전권고 담당조사관을 조사단장으로 자동 연계(자료입력 간소화)
 - 안전권고 내용 및 분야를 포함한 통계 연계자료 현행화, 통계기능 개선
 - 안전권고 검색 키워드 세분화(조사관, 사고명 등)
- 시스템 메인 페이지 세분화 및 이용 불편사항 개선
 - 사용자 권한그룹별(조사관, 관리자 등) 메인 페이지 설정 기능 개발
 - 부가자료 등록 등 불필요한 메뉴 통폐합
 - 정보삭제 확인 알림창 추가(인적오류 예방)
 - 자료 일괄 업로드 기능 복구, 단일 파일 업로드 크기 조정
- 시스템 교육
 - 조사관 및 관리자 등 사용자 맞춤교육 실시

- 4 -

8. 기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 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 제2항,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제8조에 따라 도입예정인 상용SW 직접구매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지함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번호	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수량	직접 구매 여부	제외사유	비고
1	웹리포팅솔루션	1	직접구매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고시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기간을 산정한 후에 제안 요청서에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 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II. 제안 요청내용

1. 일반지침

- 모든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거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 제안요청서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과업 수행자간의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2. 세부과업 지침

1) 개발방향

- 최종 사용자가 쉽게 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
- 네트워크를 통한 다량·다수의 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및 시스템의 확장 등 시스템의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2) 사업관리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문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투입인력에 대한 프로필과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역할, 투입율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 인력은 발주처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과업수행 중 개발책임자 및 수행요원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에 투입된 인력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초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경험·자격요건 등이 동급 이상인 자로 교체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기술인력 변경요청 공문
 - 퇴사, 불참 등에 대한 증빙서류 및 변경하고자 하는 기술인력의 이력서, 보안서약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각 1부
- 본 사업을 공동수급으로 하는 경우, 구성업체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대표사는 구성업체의 관리방안을 제시해야한다.
-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의 추가 투입 등 지원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3) 일정관리

- 사업자는 시스템 구축에 있어 연구·개발 및 성능개선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별 상세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작업 수행공간간 상호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일정계획이 제시되어야 하며 감리 및 품질보증기간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 추진일정은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발주처가 제안 요청한 추진일정과 제안된 일정계획이 다를 경우 용역 기간 내 사업의 완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보고관리

- 사업자는 과업진도와 과업추진 내용을 주관기관이 열람하고자

- 7 -

하는 경우 언제든지 응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보완 등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따라야 한다.

- 사업자는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수시로 주관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하며, 회의 시에는 과업수행 책임자가 참석하여야 한다.

5) 기간조정·용역비 집행관리

- 과업시행과정에서 과업지시내용 및 용역비용, 용역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지시내용 및 용역비용,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가 발주처에 제출한 세부과업계획서상의 과업담당자를 본 과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비를 조정할 수 있다.
- “인건비” 및 “경비”는 실제 투입한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과업종료일까지는 집행근거자료를 제출한다.
- 과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용역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는 용역업체에서 발주처에 배상하여야 한다.

6) 소유권·저작권 등 관리

- 본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연구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사업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

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로의 확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본 용역 사업은 공익 목적으로 비영리로 가시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출물(가시화 소프트웨어)은 산학연 기관 및 소속 이용자, 개인 연구자 등에게 공동 활용됨
- 이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저작권, 소유권, 특허권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7) 사업지원관리

- 용역검수 후 담당자에게 기술이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기타 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교육을 무상 지원하여야 한다.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사업자는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 9 -

- 과업완료 후 준공금 청구 시 하자보수 보증증권(보증기간: 12개월, 보증금액 : 계약금액의 2%이상)을 발행하여야 한다.

8) 보안관리

- 용역과정에서 취득한 제반자료와 정보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임의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의유출에 대한 책임은 용역수행자에게 있다.

9) 기타

- ‘일반지침 및 세부 과업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하기 ‘상세요구사항, 보안대책, 보고서 제출 등’에 따르며, 그 외 사항은 발주처 의견에 따른다.

3. 설계변경 조건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과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 과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 계획의 변경으로 과업내용 및 물량이 증감되었을 경우
- 기타 발주처의 사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제안 요청사항 분류

구 분	설 명	건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SYR)	목표시스템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HW,SW,NW 등 장비 내역 및 필수요구사항, 구성요건에 대해 기술	0
기능 요구사항 (FUR)	대상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대상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 작)에 대해 기술	3
성능 요구사항 (PER)	대상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성능관련 요구사항에 대 하여 기술	2
보안 요구사항 (SER)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대상시스템의 데 이터 및 기능, 운영접근 통제를 위한 요건을 기술	5
품질 요구사항 (QUR)	대상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2
테스트 요구사항 (TER)	대상시스템에 대한 단위/통합/시스템/사용자승인 테스트 등에 결과 및 개선 요건을 기술	1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대상시스템과 외부시스템을 연계하는 시스템 인터페이 스에 대한 요건을 기술	1
데이터 요구사항 (DAR)	대상 시스템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DB 구축 및 데 이터의 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요건을 기술	9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SOR)	대상시스템의 정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조건, 유지관리 업무, 운영조직, 지원업무 등을 기술	1
계약사항 (COR)	기능 및 비기능,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 외에 시 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계약 및 요건을 기술	4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프로젝트 운영 조직, 일정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	1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상기 요건 외에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산출물 관리, 기술이전 및 교육지원, 자문회의 수행 사항 등을 기술	5
기타사항	상기 요건 외에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사항 기술	1
합 계		35

5. 상세 요구사항

□ 기능요구사항

○ 철도사고조사관 이력 및 교육훈련기록 관리

FUR-001			
요구사항명	철도사고조사관 이력 및 교육훈련기록 관리	용량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 사고조사관의 이력관리, 교육훈련기록 관리 - 업무 자료 게시관 추가		
요구사항 내용	○ 사고조사관의 이력관리 및 교육훈련기록 관리 -조사관 임용·보직일자 등 이력관리 -초기교육 등 필수·선택교육 등 교육훈련기록 관리 ○ 조사관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게시관 신설 -조사관 업무별 게시관 및 공지사항 게시관 등		

○ 안전권고 관리 기능 개선

FUR-002			
요구사항명	안전권고 관리 기능 개선	용량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안전권고 관리 기능 개선		
요구사항 내용	○ 안전권고 관리 기능 개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의 [별지7], [별지16] 등 출력 기능 추가 -안전권고 담당조사관을 조사단장으로 자동 연계 -안전권고 내용 및 분야를 포함한 통계 연제자료 현행화 및 통계기능 개선 -안전권고 검색 키워드 세분화(조사관, 사고명 등)		

○ 시스템 메인 페이지 세분화 및 이용 불편사항 개선

FUR-003			
요구사항명	메인 페이지 세분화 및 시스템 불편사항 개선	용량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 메인 페이지 세분화 및 이용 불편사항 개선		
요구사항 내용	○ 시스템 메인 페이지 세분화 및 시스템 불편사항 개선 -사용자 권한그룹별(조사관, 관리자) 메인 페이지 세분화 - 불필요한 메뉴 통합 - 등록 자료 삭제 시, 알람 등 기능개선 - 자료 일괄 업로드 기능 복구(관리자 전용)		

□ 성능요구사항

PER-001			
요구사항명	시스템 응답속도	응답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 응답속도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 모든 요구사항은 사용자가 요청하는 시점부터 3초 이내에 그 결과를 현시 * 예외사항은 사안별 별도 협의		

PER-002			
요구사항명	데이터 형식오류 응답시간	응답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 형식오류 시 응답시간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입력 후 2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		

□ 보안요구사항

SER-001			
요구사항명	보안 일반 사항의 준수	응답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과업 수행 시 준수하여야할 수행 보안 절차, 방법, 체계를 준수한다.		
요구사항 내용	○ 사업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정·규칙·세칙·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보안업무 내규 등의 보안관리규정 준수 ○ 사업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보안사고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용역사가 진다. ○ 제안사는 다음 사항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 보안각서 징구(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보안업무 내규 별지 제 14호 서식) ·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 외 참여제한 · 참여자 교체시 조치 등 (2) 용역사업 참여자의 접근방지대책 · 작업장소 구분 · 출입자 통제 등 (3)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대책 · 보관함 구분 및 정·부책임자 지정 · 회의자료 등의 제한발행 및 회수·파기 · 비밀·대외비 등 주요사업의 경우,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 보안 업무 내규 별지 제7·2호 서식에 의한 업무일지 작성 등		

	(4)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대책 ·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관련 규정준수 · 납품물량 외 추가발행 금지 · 불량·파지 등의 소각 및 파기대책 등 (5) 기타 과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보안필요사항 ·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대책 · 참여직원(하도급업체 포함)에 대한 보안교육 계획 등 ○ 사업자는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시행세칙,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 보안업무 내규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동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안성 검토결과 반영
--	---

SER-002			
요구사항명	보안 정보 누출 방지	응용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사업자는 다음의 정보에 대하여 대외에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내용	○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제조사, 제품버전 등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통신망 취약점 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		

SER-003			
요구사항명	개인정보 보호	응답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보안 대책에 따라 과업을 수행한다.		
요구사항 내용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시 암호화 등 “개인 정보 보호법”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시스템 운영·관리 ○ 주기적인 개인정보 노출점검		

SER-004			
요구사항명	SW 개발 보안	응답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신규 기능 개발 및 유지보수 시 SW 개발 보안 가이드에 따라 개발한다.		
요구사항 내용	- 소스코드 상의 보안취약점을 제거·수정하도록 ‘SW 개발보안 적용’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SER-005			
요구사항명	보안 관리 상태 점검	응답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발주처는 과업수행자의 보안 관리 상태를 관리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요구사항 내용	발주처는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고 보안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즉시 따라야 한다.		

□ 품질 요구사항

QAR-001			
요구사항명	품질보증	응답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용역수행업체는 프로젝트 품질 향상을 위한 적절한 방법을 제시해야 함		
요구사항 내용	- 개발 공정별 산출물, 품질보증 요건에 대한 기준 및 세부사항을 제시하고 용역성과물에 대해 이를 적용 - 프로그램 개발 단계별 시험, 설치 등 전 과정에 대한 검증 및 품질보증방법 제시 - 제안서에 제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용역 수행 중 증대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 수정, 삭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용역수행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함 - 시스템 개발(프로그램)이 완료되면 일정기간의 단계별 테스트, 시범운영/보완 등을 거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검수 후 완료보고 수행 - 개발초기부터 완료까지 지속적으로 시험을 실시하여야하며,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반영(에러 확인조치, 에러 외에 불편사항에 대한 보완)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함		

QAR-002			
요구사항명	데이터 품질관리	응답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내용	공공정보 품질관리 매뉴얼 (2018. 1)을 적용하여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요구사항명	테스트 방안	응답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 구축에 대한 테스트 유형 및 환경 정의		
요구사항 내용	- 시험운영은 정한 기간 내에 수행하도록 하고, 완료 되지 못하는 경우, 쌍방이 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조치하고 보완 완료시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며 추가비용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책임을 지게 됨 - 사업자는 제공 시스템의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함을 제안요청서에 명기하여야 함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001			
요구사항명	시스템 확장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구현	응답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향후 시스템 확장성을 고려하여 인터페이스 구현		
요구사항 내용	- 향후 시스템 확장성 개발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현		

□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요구사항명	데이터 요구사항	응답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내용	-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 법정부 표준을 준수한 기관의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기관표준 등에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관련 산출물 체크리스트		

DAR-002			
요구사항명	데이터 요구사항	용량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공통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내용	○ 범정부 표준 준수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를 준수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화 수립 전 구축 시스템과 관련된 분야별 표준 여부를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을 준수하여야 함 ○ 주관기관 표준을 준수 - 수행사는 주관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산출정보			

DAR-003			
요구사항명	데이터 요구사항	용량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메타관리시스템,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관리시스템 가이드 등을 참조(정보화통계담당관실)		
산출정보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등)		

DAR-004			
요구사항명	데이터 요구사항	용량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내용	○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일관성, 데이터의 종속성, 무결성, DB 성능 등이 고려되어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이 반영되어야 함 -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의 설계 산출물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함 ○ 데이터 발생과 처리의 이해를 높이는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 - 인조 식별자가 많은 엔터티의 경우 데이터 구조만으로 발생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를 작성해야 함		
산출정보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데이터 모델 설계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 엔터티 정의서, 속성 정의서, 테이블 정의서, 컬럼 정의서, 데이터베이스 정의서		

DAR-005			
요구사항명	데이터 요구사항	응답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내용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주제영역 도출, 개념모델, 논리모델, 물리모델 도출 시점을 전후로 검증과 교육을 수행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 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칼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산출정보	○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서, 데이터 모델 검증 결과서,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개념모델 정의서, 논리모델 정의서, 물리모델 정의서		

DAR-006			
요구사항명	데이터 요구사항	응답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도구		
요구사항 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 중인 메타관리시스템 가이드 등을 참조해야 함(운영 시스템·자료가 있는 경우)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 관리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DAR-007			
요구사항명	데이터 요구사항	응답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진단 수행 일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데이터 값 진단 범위(전체 또는 일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범정부표준과 발주기관 표준을 준수하여 진단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서, 데이터 값 개선방안		

DAR-008			
요구사항명	데이터 요구사항	응답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사항 내용	○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표준, 구조,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의 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방안(기능, 진단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 목록 및 항목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의 정의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연계 시스템 도입 시 시스템과 연계된 체계 수립 - 오류 데이터의 진단 및 개선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 데이터 (표준, 구조, 연계, 품질)관리 체계서, 품질관리(진단/개선)계획서 및 결과서, 품질진단 결과서 등		

DAR-009			
요구사항명	데이터 요구사항	응용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 개발 관리체계		
요구사항 내용	○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개방데이터의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발주기관의 메타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관리시스템에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 개방데이터 목록 정의서,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서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SOR-001			
요구사항명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조체계 유지	응용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 장비를 유지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긴밀한 업무 협조		
요구사항 내용	장비 관리, 장애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등 각종 시스템을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업무 지원 수행		

계약사항

COR-001			
요구사항명	개발 방법론 제시	응용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본 사업 수행절차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방법론을 단계별로 제시		
요구사항 내용	○ 본 사업의 공정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방법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원활한 공정 및 진도관리를 위한 관리 도구를 제시 ○ 개발 및 문서화 등 프로그램과 데이터 관리에 대한 표준화방안을 제시		

COR-002			
요구사항명	시스템 장애 대책	응용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 유지보수 시 적용하여야 하는 기술 및 무 중단 운영에 대한 제약 조건 및 의무		
요구사항 내용	○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 장애가 발생하여 손해 발생 시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 시스템의 최적 운용 방안 및 응급처리 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장애 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COR-003			
요구사항명	데이터 표준화 및 데이터 관리지침 준수	응용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 표준화 및 데이터 관리지침 준수		
요구사항 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9-69호, 2019. 8. 23) 제7조 제4항에 따라 작성된 ‘기술적용계획표’준수(붙임2 참조)해야 한다.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2019-71호, 2019. 9. 3) 준수		

COR-004			
요구사항명	웹 표준 및 호환성·접근성 준수	응용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내용	○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의 준수하여야 한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해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준수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기획, 설계, 테스트, 운영 전 분야)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고 행정안전부 표준 프레임워크를 사용한다. ○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하여야 한다.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요구사항명	일정관리	응답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프로젝트 추진 일정 계획을 제시하고 일정에 따라 관리		
요구사항 내용	○ 사업자는 시스템 구축에 있어 연구·개발 및 성능개선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별 상세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 ○ 작업 수행공정간 상호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일정계획이 제시되어야 하며 품질보증기간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상세하게 기술 ○ 추진일정은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작성 ○ 발주처가 제안 요청한 추진일정과 제안된 일정계획이 다를 경우 용역기간 내 사업의 완료를 위한 대체방안 제시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FSR-001			
요구사항명	보고 관리	응답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사업 추진 단계별 보고 수행 및 보고서 제출		
요구사항 내용	○ 사업자는 주관기관이 지정하는 일자에 보고회(착수, 최종)를 실시하여야 함. 최종보고회는 과업성과물을 총 정리한 종합보고가 되어야 하며, 이 때 주관기관이 보완 또는 수정 지시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와 함께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주관기관에 제출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함 (1) 과업추진 조직표(사업책임자 및 선임계) (2) 세부과업 수행계획 및 공정예정표 (3)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4)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참조 ○ 사업자는 착수보고회(계약 후 7일 이내), 최종보고회(과업종료 10일전)를 개최하여야 함 ○ 본 과업은 관계 법규와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과업목적의 성실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또는 지시에 따라 수행·보완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과업수행 중 타 행정기관 또는 타 업체의 협조 사항이 있을 경우 주관기관에 보고하고 별도지시에 따라야 함 ○ 사업자는 과업진도와 과업추진 내용을 주관기관이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언제든지 용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보완 등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매월 5일까지 진척사항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함(주간실적보고 포함) ○ 사업자는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수시로 주관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하며, 회의 시에는 과업수행 책임자가 참석하여야 함
--	--

FSR-002						
요구사항명	산출물 관리		응답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각종 산출물에 대한 작성 및 제출시기 정의					
요구사항 내용	○ 사업자는 「전자정부법」 제45조 내지 제48조에 의한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2호, '18. 1. 8))」에 따라 사업 종료 시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사업완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가능토록 개발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Source 포함)를 산출물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을 각 구축 단계별로 제출자료 형식, 제출방법 및 부수와 함께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과업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함					
	번호	항 목	제출목적	규격	부수	제 출 시 기
	1	착수보고서	승인용	A4	2	계약 후 7일 이내
	2	과업수행계획서	승인용	A4	2	계약 후 7일 이내
	3	최종보고서	보고용	A4	10	과업종료 직후
	4	사용자 매뉴얼 (교육용 교안 포함)	보고용	A4	10	과업종료 직후
	5	시스템 DB	보고용	CD	2	과업종료 직후
	6	시스템 개발소스	보고용	CD	2	과업종료 직후
	7	개발산출물 (분석,설계자료)	보고용	CD	2	과업종료 직후
	8	CD-ROM (과업중 보고 및 성과품 수록)	보고용	CD	2	과업종료 직후

PSR-003			
요구사항명	교육 훈련 및 기술 이전	응답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 운영 관련 기술 이전, 교육, 자문 등에 대한 지원		
요구사항 내용	○ 사용자 및 관리자가 새로운 시스템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 방안을 기술하여야 함 - 교육훈련방안은 사용자 교육내용, 교재 제작 등을 기술하여야 한다. - 교육 대상자들의 신규시스템에 대한 적응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교육 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 - 시스템 운영요령을 매뉴얼로 제작 후 제공하여야 한다. ○ 기술력 향상과 운용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계획을 분야별로 상세히 제시하여야 하며, 아울러 사업자는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한 신기술 적용방안을 기술할 수 있음		

PSR-004			
요구사항명	기술 지원	응답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사업에 필요한 기술 및 운영 지원		
요구사항 내용	○ 사업자는 본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지원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스템 및 패키지 S/W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기술지원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 사업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하여 발주처에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기술지원 혹은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검사 완료 후에는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무상하자보수기간 동안 인력 운영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PSR-005			
요구사항명	하자 보수 지원	응답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구축되는 H/W 및 시스템 S/W의 분야별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		
요구사항 내용	○ 분야별 하자보수 기간, 하자보수조직 지원범위, 지원방법, 지원인원 ○ 시스템 성능을 양호하게 운영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담당 기술자를 선정하여 신속한 장애 복구 실시 - 고장 부품의 수리 및 교환 - 장애 상황의 진단 및 분석 후 최적의 서비스 ○ 시스템의 H/W와 네트워크 장비는 전문 업체의 기술지원이 가능하도록 협력업체 등을 포함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하자보수 지원체제 마련 ○ 하자보수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서비스 지연이나 손실을 주었을 경우 사업자는 발주처에 손해배상을 해야 함 ○ 하자보수를 위한 장애신고 접수 및 장애처리 체계를 제안서 내에 포함		

	하여야 함 ○ 사업자가 발주처의 전산장비 설치장소에 출입하면서 습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함 ○ 하자보수 기간 중 사업자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하자보수가 곤란한 경우 또는 하자보수 요원의 태만으로 발주처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인력을 교체해야 함 ○ 사업자는 납품 S/W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며, 개발 및 운용환경의 기술지원, 진화 및 e-mail 등을 통한 문제해결과 성능조정 작업 등 기술 상담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도록 해야 함 *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제58조)에 따라 하자보수
--	---

□ 기타사항

PER-001			
요구사항명	작업 장소	응답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작업 수행 장소를 제안서에 명기해야 함		
요구사항 내용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 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8조의 2,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41조) ○ 파업수행기관은 작업장소 협의 시 제안요청서 및 파업지시서 등에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작업장소(원격지)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파업수행기관은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파업수행기관은 파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 대책(참여인원, 원격지 개발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 보안 확보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이 작업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작업장소, 관련 설비, 관련 부대비용 등을 무상으로 제공함 ○ 파업수행기관이 제시한 작업장소에서 사업 수행 시,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 금액에 포함시켜야 함(작업장소 사용료, 수도 광열비,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 과업 추진일정 및 수행체계

과업내용	과업수행기간(월)			비고
	M	M+1	M+2	
1. 사업관리				
1) 착수				
2. 프로그램 개발 및 구현				
1) 환경분석 및 설계				
2) 조사관 이력 관리 및 교육훈련 관리 기능 개발				
3) 안전권고 기능개선				
4) 메인페이지 세분화 및 UI 개선				
3. 테스트 및 검수				
1) 단위테스트 및 통합테스트				
2) 사용자 교육 및 최종보고				

※ 상기 일정은 개략적인 일정으로, 착수제 제출 시 세부추진계획 수립하여 제시

6. 보안대책

□ 일반사항

- 가. 용역수행기관 대표자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보안업무내규」에 따라 자필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징구, 착수보고서 제출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나. 본 사업의 보안관련 사항은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가이드라인」,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국가·공공기관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매뉴얼」,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41조,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2조 등에 따라 SW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 라. 누출금지대상정보 누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등록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마.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바. 과업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하여야 한다.
- 사.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아.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해야 한다.
- 자. 용역보고서 등 관련 문서는 용역감독관과 사전협의 등 보안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요도에 따라 적정 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고,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비밀취급 인가업체를 이용하고 보안책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고 원지·폐지 등은 완전히 회수하여 소각 하여야 한다.
- 차.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 등을 사전에 방지해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카. 과업수행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사전 승인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내용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성과품 작업 시 참여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타. 기타 과업수행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기타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 파. 과업내용 중 일부를 외국의 전문기술·지식을 활용하거나,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에도 동일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하.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은 용역 준공시에 전부 납품토록하고, 성과품을 추가로 인쇄하거나 보관이 필요할 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거.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항공·

- 29 -

철도사고조사위원회 보안업무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네트워크 보안대책

- 가. 접근제어 구현시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등을 이용하여 IP·Port별 통제가 가능하도록 보안정책 적용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대책

- 가. 발주기관 內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설치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은 발주기관의 정보통신망과 분리 구성하여야 한다.
 - * 용역업체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 정보시스템 이용이 불가피할 경우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한해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근 허용 등 보안대책 수립·시행
 - * 내부망 정보시스템 접근 허용 시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 必
- 나. 개발자(테스트) 계정의 정보시스템 접속 권한을 업무별로 차등 부여하고 불필요시 즉각 권한 해지 및 계정을 폐기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 다. 개발된 소스코드에 대한 취약점 점검 및 이행조치를 필수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라. 개발서버와 운영서버는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며, 소스코드 형상관리 및 운영시스템과 동일한 수준의 취약점 점검·조치 및 보안 대책 적용 후 운영하여야 한다.
 - * 소스코드 검증 도구 미보유 시 '정보보호담당관-588(2017.2.20.)호 정보보호 업무협조'를 참조하여 공문으로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신청 권고
- 마. 시스템 개발이나 장애처리 목적 등의 사유로 외부 업체망(인터넷망)에서 개발·운영중인 시스템 등으로의 원격 접속은 원칙적으로 허용 불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사업 추진시 테스트 등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 접속허용 포트·서비스 엄격 관리

2) 사업수행 중 허용되었던 임시 방화벽 보안정책은 사업종료 후 기존 정책으로 원상 복구 수행

바. 개발 및 운영업체는 별도망으로 구성하며, 방화벽 등을 이용하여 내부 업무영역 및 인터넷 접근을 차단하여야 한다.

* 인터넷 접근이 필요할 경우 업무용PC 외 별도 인터넷 전용 PC를 사용하며, 이에 대한 관리 철저

사. 관리자용 웹페이지 구현시 페이지 외부노출 금지 및 전송 데이터 암호화를 적용하여야 한다.

- 1) 관리자 페이지는 일반사용자 로그인 페이지와 구분되는 별도 페이지로 구현
- 2) 내부망 IP 또는 특정 일부 IP에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자 페이지 접근제한 적용
- 3) 전송 데이터 보호를 위해 SSL 등을 이용한 암호화 통신 적용

아. 소스코드 검증 완료 후 OS·WAS·DB 등에 대한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여 도출된 취약점 제거 후 운영하여야 한다.

□ 서버 보안대책

가. 중앙서버 및 침입차단시스템은 잠금장치가 있는 별도 보관함(서버랙)에 보관하며, 비인가자에 대한 물리적 접근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중앙서버는 클라이언트PC와 동일한 수준의 보안대책(내 PC지키미, 알약, 보안USB 등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프로그램 설치)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 시스템 관리자를 지정하고, 서버의 운용에 필요한 서비스 포트 외에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및 관리용 서비스와 사용자(모니터링)용 계정을 분리 운용하여야 한다.

- 31 -

라. 서버 등 제품 설치시 생성되는 기본(default) 계정을 삭제 또는 변경하고 사용자 비밀번호 설정 시 특수문자를 포함한 9자리 이상 비밀번호 설정 및 주기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마. 상용 정보보호제품 도입시 CC인증 필수 제품군은 국내 CC인증 제품 도입, 그 외의 기타 정보보호 제품군(해외CC 인증 포함) 및 네트워크 장비(L3스위치 이상) 도입시 국정원의 보안적합성 검증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바. 관리자페이지는 일반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하고 접근기록은 6개월 이상 관리, 정기적으로 비정상 접속을 확인하여야 한다.

사. 시스템 관리자는 내부의 인터넷이 차단된 지정된 단말PC에서만 원격접속이 가능하도록 IP·MAC·사용자별 접근통제를 설정하고 로그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아.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시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준수하여야 한다.

□ 용역업체 보안대책

가. 용역사업 수행 전체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의 보안교육 실시하여야 한다.

* ‘누출 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시 부정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나.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은 발주기관 내부망 및 기관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별도의 전용 통신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 용역사업을 위해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한 별도의 기기를 지정·관리하고 기관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단말기 등은 인터넷 접속을 금지하여야 한다.

- 32 -

라. 인터넷 허용 PC는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P2P·웹하드·메신저 등 비인가 사이트 접속 차단 및 업무에 필요한 웹사이트에만 접속토록 통제하여야 한다.

마. 인터넷 허용 PC는 인터넷 검색용으로만 활용하고 업무 수행 및 업무 관련자료 저장을 금지하여야 한다.

바. 비인가 통신기구나 테더링·상용 인터넷 등 허가되지 않은 통신망을 이용할 수 없도록 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자료보안대책 등

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부록7)에 의거 용역사업 계획 단계부터 완료 시까지 보안관리 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업체에 제공된 비공개 자료 관리실태 및 인터넷 연결 PC에 개발·유지보수 관련자료 보관여부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전산망 구성도, 시스템 IP주소 / ID / PW 등

다. 용역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 1)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할 수 있도록 개발
- 2) 계정별 부여 접속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할 수 있도록 개발
- 3)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
- 4)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 33 -

대한 접근기록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할 수 있도록 개발

라. 사업종료 후 용역관련 제반자료 및 산출물 등을 일체 보관하지 않는다는 약약서 정구 및 위규 시 제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바. 미인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에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사. 외주 용역사업은 정보시스템 관련 보안특약 및 보안위반 처리 기준 등을 준용하여 보안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 기타 보안대책

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언어별 시큐어코딩 가이드(C, JAVA, Android JAVA)(행정안전부)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한다.

마. 국가·공공기관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 기타 보안관련 규정 및 자체 수립한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7. 보고서 제출 등

□ 착수계 및 예정공정표 제출

-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고시기 및 방법

가. 착수보고회 : 계약 후 7일 이내

- 과업추진조직표(사업책임자 및 선임계), 세부과업 수행계획 및 공정예정표, 과정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보안대책 및 보안 각서, 기타 용역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과업수행계획서를 보고한다.

나. 최종보고회 : 과업 종료 10일 전

- 과업의 최종결과물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 수시보고 : 월/주별 진행사항 및 결과보고

- 본 과업의 추진상황(금주 이행 결과 및 다음주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매주 목요일까지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매월 5일까지 진척사항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보고서 등 성과물 제출부수

번호	항 목	제출목적	규격	부수	제 출 시 기
1	착수보고서	승인용	A4	2	계약 후 7일 이내
2	과업수행계획서	승인용	A4	2	계약 후 7일 이내
3	최종보고서	보고용	A4	10	과업종료 직후
4	사용자 매뉴얼 (교육용 교안 포함)	보고용	A4	10	과업종료 직후
5	시스템 DB	보고용	CD	2	과업종료 직후
6	시스템 개발소스	보고용	CD	2	과업종료 직후
7	개발산출물(분석,설계자료)	보고용	CD	2	과업종료 직후
8	CD-ROM(과업종 보고 및 성과품 수록)	보고용	CD	2	과업종료 직후

- 사업의 성과는 최종보고회 심의를 받은 내용을 최종 보완하고 과업종료 직후 인쇄·제출하여야 함
- 산출물은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고 수량 부족 시에는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음

III. 참가자격 및 계약방법 등

1. 참가자격(아래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70)으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한 자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 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대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 * 계약체결시 공동수급협정을 맺은 협정서 제출
- 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하여야 함

- 37 -

- 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2. 계약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적격자 선정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인 경우 제안서 평가결과와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IV. 입체 선정방법

1. 일반사항

- 가. 제안요청 발표 : 실시하지 않음(제안요청서로 갈음)

나. 제안서 발표

- 1) 일시 및 장소 : 추후통보(제안업체에 별도통보)
- 2)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순서와 동일
- 3) 발표시간 : 업체당 30분 이내(제안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 4) 제안발표 참석인원 : 총 3인 이내(발표자 포함)
- 5) 제안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프로젝트 관리자(PM)가 직접발표
-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

- 다. 계약협상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에 의함

2. 제안서 평가

가. 적용 법령 및 평가 내용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에 따름
- 2)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및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각 입찰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되, 본 사업의 특성에 맞게 작성한 평가항목, 배점범위 등 내부평가기준을 적용한다.
- 3)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평가는 기술평가 90%(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종합평가(기술평가+가격평가) 결과 고득점을 얻은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 4) 기술평가 점수의 85% 미만의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하고,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평가를 실시한다.

나. 제안서 평가 원칙

- 1)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발주처에서 5인 이내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 2) 평가결과는 비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3) 제안내용 중 “가능하다”, “동의한다”, “고려한다” 등의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입증자료를 제출 받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가능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 기술 평가

- 1)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을 적용하며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한도를 조정하여 “마”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 2)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하고 9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기술평가 점수로 한다.
- 3)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라. 가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 기술평가 항목별 배점기준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30점)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10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5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 적용기술의 혁신성 • 적용기술의 최신성	9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유지 관리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의 기본 골격과 재사용 모듈 등 표준 프레임워크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표준프레임워크 내용의 이해도 • 표준프레임워크 적용의 명확성 • 표준프레임워크 미적용 시 사유의 타당성 •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의 타당성	3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절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	• 개발절차의 타당성 • 개발산출물의 적정성	3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한도
		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 적용방법론의 경험	
기술 및 기능 (25점)	시스템 요구사항	도입필요 준비를 제안하며 제시된 장비가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보수에 대해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도입필요 장비의 규격 적정성 • 도입대상 장비의 호환성 • 도입대상 장비의 확장 편의성 • 도입대상 장비의 설치용이성 • 도입대상 장비의 유지보수 지원	3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함을 평가한다.	• 기능 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기능 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8
	보안 요구사항	정보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대상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업권 통제를 위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함을 평가한다.	•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5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여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며, 데이터 전환을 위해 책임 조직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 데이터 전환 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 관련 조직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6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 제약사항의 충족도 •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3
성능 및 품질 (15점)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 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5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또한 각 단계마다 품질 요구사항을 점검하는 별도의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 관련 조직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5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에 있는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 관련 조직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5
	프로 젝트 관리 (14점)	관리 방법론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5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한도
			• 분리발주 사업자간 협력방안의 적정성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선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사람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 자원배분의 합리성	4
	개발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사업자의 참여 준비성 • 개발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 개발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5
프로 젝트 지원 (12점)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운영 방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 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 시험운영 내용의 적정성 • 시험운영 일정의 적정성 • 시험운영 조직의 적정성	3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 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2
	유지보수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 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유지보수 계획의 적정성 • 유지보수 조직의 적정성 • 유지보수 절차의 적정성 • 유지보수 범위의 적정성 • 유지보수 기간의 적정성	3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산성	2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백업/복구 대책 • 장애대응 대책	2
	하도급 계약 적정성 (4점)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일괄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제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한다.	• 전문기업 보유 기술과 기술 요구 사항의 일치성 • 전문업체 보유기술의 실현가능성 •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 적정성	4
	계			100

* 비계량 평가 기준, 점수계산은 소수 이하 3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한다.

4.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가. 제안서평가 결과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나. 위 1)항에 의거 선정된 협상적격자에 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가격평가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가격협상을 실시한다.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로 한다.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나머지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라. 협상금액
가격의 협상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제12조에 의함

마. 협상결과와 공개 등

- 1) 제안자는 평가절차, 평가방법, 협상대상자, 낙찰자 선정결과에 대해 근거유무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입찰서 평가결과와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 2) 제안요청서 요구내용에 맞지 않거나 과업수행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V. 입찰자 유의사항

가. 「제안요청」의 수정과 철회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필요시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며, 「제안요청서」에 대한 수정사항은 모든 입찰참가통지서 제출자에게 e-발주시스템으로 통지하고 「제안요청서」의 수정분을 e-발주시스템으로 배부 받은 입찰자는 접수여부를 즉시 e-발주시스템으로 국토교통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제안요청을 철회할 권리를 가지며, 이로 인한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나. 제안서 작성비용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제안서 작성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된 일체의 비용과 계약자 선정 및 낙찰자선정 과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타의 업무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며, 최종계약 체결 및 착수지시서 발행이전에 수행되는 모든 사항들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 관계법령의 숙지

입찰자는 관계법령 및 국가의 계약관련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안내서, 「과업지시서」 등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사항은 계약의 일부가 된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라. 하도급

- 1)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3)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한다.
- 4)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 5)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 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 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마.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계약서 제출

-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 45 -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② ①에 따라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17】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바. 청렴 계약이행 준수

- 본 용역은 우리 부의 청렴계약제 대상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사. 기타

- 1) 입찰자는 국토교통부가 e-발주시스템으로 배부한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관련 정보를 입찰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41조,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2조 등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VI. 기타사항

- 가.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제안서 작성 사업업자가 부담하여야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
- 나.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제안서는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제안서 내용의 기재사항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중대한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자격을 박탈함
- 라. 증빙요구 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무효처리하며 추가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
- 마. 제안서의 작성은 제출양식 및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정확히 수록하고 해당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이라고 명기하여야 함
- 바. 제안서 작성에 따른 기간 계산은 사업입찰안내 공고일로 함
- 사. 평가대상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사업 수행에 참여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기술자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이상의 자격, 경력, 실적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반드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아. 본 사업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평가서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하는 업체와 업무정지를 받고 있는 기술자는 당해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자.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 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람.

- 47 -

- 1) 회계관련 : 운영지원과 ☎ 044-201-3186 (FAX 044-201-5512)
- 2) 기술관련 :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 044-201-5443 (FAX 044-868-2407)

VII. 제안서 작성요령

1. 일반사항

가. 제안서는 사업을 수행할 최적의 업체선정 기초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므로 본 제안서와 과업내용에 따라 실현이 가능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 서명

- 1) 제안자가 제출한 각 제안서는 제안자 또는 제안자에 의해 법적으로 위임받은 공식 대표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안자는 각 제안서 및 계약관계 서류에까지 법적으로 제안자를 대표할 서명자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e-발주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2) 제안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 회사는 제안서 상에서 또는 제안자로부터 생기는 모든 계약 하에서 제안자가 부담하게 될 과업과 책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므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과업의 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참가 신청서 및 제안서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제안서 제출기한 : 입찰공고 참조

나. 제출 장소 : 입찰공고 참조

다. 제출서류(붙임 참조) : 입찰공고 참조

- 49 -

3. 제안서 작성지침

가.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A4(210×297mm) 용지에 세로 방향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가로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다. 제안서는 반드시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라.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명기하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마.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바.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기술평가 시 “평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가능한 한 계량화하여야 한다.

사. 제안서 작성 시 항목 구분방법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12호, '17. 10. 17)」 제2조(공문서작성의 일반원칙)를 따를 것

4. 제안서의 구성

○ 사업 제안서는 다음과 같은 목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50 -

작성 항목	세부 목차 및 주요 내용
I. 일반현황 (공동수급업체 포함)	1. 제안사 일반현황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3.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II.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프레임워크적용 5. 개발방법론
III.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4. 데이터 요구사항 5. 제약사항
IV.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V. 프로젝트 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2. 추진일정계획 3. 개발장비
VI. 프로젝트 지원부문	1. 시험운영방안 2. 교육훈련방안 3. 유지보수방안 4. 기밀보안방안 5. 비상대책
VII. 하도급 계약 적정성	하도급 계약 적정성
VIII. 기타	상기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제시한다.

5.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세부 작성 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I.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 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최근 3년간의 실적, 조직현황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참조)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참조)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3.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참조)

	- 컨소시엄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되므로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되어야 함 - 성명, 소속, 최종학력, 해당분야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사업 참여임무, 기술등급, 목표투입공수(M/M), 최근 3년간 주요경력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II.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혁신성, 최신성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제안사는 표준프레임워크 내용의 이해도, 적용의 명확성, 미적용 시 사유의 타당성, 적용방안의 타당성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III.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요구사항	시스템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구성장치의 사양, 기능, GS인증제품 제안내역 등을 제시하고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계획을 기술하여야 한다.(특히, 장비의 최대 사양 중 제안 사양을 명확히 제시)
2. 기능 요구사항	기능 구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안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계획 및 검증방법, 여러 데이터 처리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제약사항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IV.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사용자인터페이스의 구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V.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사업추진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개발장비	사업자의 참여준비성, 개발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개발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VI. 프로젝트 지원	
1. 시험운영방안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2. 교육훈련방안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유지보수방안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기밀보안방안	기밀보안체계의 적정성, 기밀보안대책의 확실성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비상대책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해 백업/복구대책, 장애대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VII. 하도급 계약 적정성	
	전문기업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전문업체 보유기술의 실현가능성,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VIII. 기타	
	상기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6. 유의사항

가. 제안사는 계약진행 및 사업완료 후 무상 하자보수 기간 동안 발주처에서 감사 등의 사유로 본 사업 이행에 관한 자료제출, 서류열람 등의 요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나. 컨소시엄 구성 시 구성업체 중 대표업체를 전담사업자로 하며 협력업체와의 제안서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는 제안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라. 제안사는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이에 따른 보상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마. 제안사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에 대하여 발주처가 지정하는 자에게만 열람시킬 수 있고, 사업 완료 즉시 사업관련 제반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제안사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해 변동 없이 계약내용의 사업 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처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 내용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으며 발주처의 승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사. 제안사의 계약이행내용 및 품질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본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정된 기일까지 보완을 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보상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해지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안사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아. 본 계약내용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발주처와 제안사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발주처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자.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추진계획 등은 발주처 사정에 의해 실제 사업 추진 시 변경, 가감될 수 있다.

- 차.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에 누락된 업무 또는 제안서에 제시하지 않는 업무도 상호협의를 따라 본 용역에 포함토록 한다.
- 카.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법·제도의 변경, 정부의 정책변경 등 사업 환경의 변화가 있을 경우 사업이 변경 또는 중지, 취소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계약이전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협상 시에 반영하여 계약토록하고 계약 이후 발생하는 변경사항은 변경 일을 기준으로 정산토록 한다.
- 타. 제안사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과 관련한 문제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 파.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는 제안사에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동 제안내용은 없음으로 간주한다.
- 하. 발주처는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대하여 수정, 보완,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업체는 제안서 평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 거. 발주처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붙임 1]

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1]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
2. [별표 2]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위규사항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1]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2]의 ‘보안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발주기관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①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명시된 **정보시스템 개발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에 따라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정보시스템 감리 등을 통해 보안약점을 진단**하여야 한다.

제5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사업 투입전 실시하고 사업 중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사업수행 장소(용역사무소, 개발실 등)의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사업자는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접근하기 위해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정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해당 계정으로 **수행한 주요작업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개발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정보통신망과도 분리** 구성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발주기관의 상급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에 대해 반·출입 시** 문서명, 물품, 일자, 고유식별번호, 목적 등을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제13조(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에게 소관

- 57 -

정보시스템(보안·네트워크장비는 제외)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

1. 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는 발주기관의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통해서 수행하여 소통구간 보호·통제
2.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 인원 통제
3. 지정 단말기는 제2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4. 접속 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제14조(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 ①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및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출물 반출을 요청할 경우** 누출금지 정보가 완전 삭제되었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 1]

누출금지 대상정보

-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 11.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 사업담당자는 사업에 필요한 공개불가 자료 추가 명시 가능

[별표 2]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별
심 각	1. 국토교통부'비공개정보 세부기준'에 따른 내부문서 유출 2.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장비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장비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센터장비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 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인터넷망 무단 혼용사용(물리적 미분리 포함),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외부 전산망(무선공유기 포함)을 무단 설치·연동 아.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개발·유지보수 시 비인가 원격작업 사용 차. 원격 개발·유지보수 시 비지정 단말 사용 카. 원격유지보수를 지정단말(용역사무실)에 외부(인터넷 등)로부터 원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접속	○위규자 및 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 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구분	위 규 사 항	처 별
	1.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카드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 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인터넷망 연결 PC하드디스크에 업무자료 임의저장 나. 인터넷망 연결 PC에 비인가 문서편집기(MS-Office 등) 설치 다. 네트워크 등 비인가 매신저 또는 파일공유프로그램 무단 사용 라. 상용메일을 활용하여 업무 자료 수발신 마.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마분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바. PC·시스템 비밀번호를 모니터영 등 외부에 노출 사.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아. 노트북·PC 등 단말기의 비인가된 무선통신 사용 자. 공유폴더를 이용한 업무자료 공유 차. 원격 개발·유지보수용 단말에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 카. 원격 개발·유지보수용 지정단말을 이용 유지보수업무 외 인터넷 접속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장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청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측정결과 조치 미흡 다. 필수 보안프로그램(안티바이러스, USB통제프로그램 등) 미설치 또는 우회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라. 노트북·PC 등 단말기내 비인가된 무선통신 기능 미제거 마.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바.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청구

[붙임 2]

제1면

제안자 각서

수 신 :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귀하

사업번호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호

일 자 :

본 제안자는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발주한 “○○○○○○○○용역” 제안 요청서의 기술사항 및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면밀히 검토하였는바 과업수행 중 직면할 수 있는 가격변동 등의 제반 문제를 충분히 숙지하여 제안서에 반영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본 제안서는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본 제안서상의 과실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점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본 제안자는 계약일반조건 및 가격조건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바대로 아무런 이의 없이 모두 수용하고 귀부에서 본 제안자가 제출한 의견의 수용여부에 대하여 별도 거절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는 전적인 권리를 갖고 있음을 동의합니다. 만약 귀부에서 동 사항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하면 본 제안자는 언제나 이에 응할 것입니다.

본 제안자가 제출한 가격제안서는 과업지서서상의 요구조건과 과업내용 등과 일치하도록 일관성 있게 작성되었으며 아울러 가격을 구성하는 제 구성 내역은 부당한 비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건전한 상관례상의 정상적인 가격을 초과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계약제결전후를 불문하고 불필요한 가격항목이나 부당한 가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국토교통부와 계약자에 의하여 확인되었을 시에는 언제든지 본 제안자는 귀부의 가격조정 요구를 수락할 것이며 또한 귀부에서 상기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와 추가 상세 내역을 요구할 시에는 제출내용이 본 제안자의 기밀사항인 경우 제3자에게 공개치 않는 조건으로 이를 제출하겠습니다.

제2면

본 제안서는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부당하다고 판명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며 동 사항과 관련한 귀 위원회의 어떠한 조치에도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본 제안자는 국토교통부의 평가, 협상 등 낙찰자 선정절차 진행 중에 귀 부의 원활한 계약업무 진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사실상 및 법률상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아울러 타 제안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월 일

(제안자 1) 회사명, 주소, 대표자 서명

(제안자 2) 회사명, 주소, 대표자 서명

[붙임 3]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안)

○○○(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은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7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¹⁾

- 1.
-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00년 0월 0일 ~ 2000년 0월 0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 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²⁾
-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2. . .

위탁자

수탁자

○○시

○○구

○○동

○○번지

○○시

○○구

○○동

○○번지

성명 :

(인)

성명 :

(인)

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65 -

[붙임 4]

일반현황 및 연혁

□ 일반사항

법 인 명	대표자			
사업의 종류 (업태, 종목)				
주 소				
연 락 처	전 화		FAX	
회사설립년월일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회 사 연 혁				
기 타 사 항				

□ 인원현황

□ 조직도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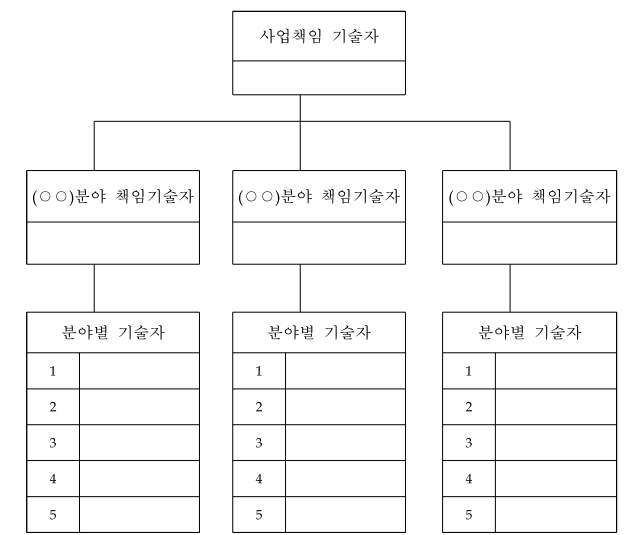
- 66 -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구 분	M-2년	M-1년	M년	합 계	평 균
1. 총자산					
2. 총자본					
3. 자기자본					
4. 유동부채					
5. 고정부채					
6. 유동자산					
7. 당기순이익					
8. 매출액					
9.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총자본)					
10. 유동자산 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공인회계사의 확인 있는 대차대조표 등 증빙자료 첨부

참여기술자 조직표



주)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2. 부문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서열별로 전문 엔지니어의
직위, 성명을 기재합니다.

참여기술자 이력

□ 참여분야 : 000 분야

성명		소속		직책		생년월일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격증			
본사업참여업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력사항							
사업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실적확인 가능한 발주처 전화번호		

※ 기술등급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제1조의2)에 준한다.
※ 투입인력 확인을 위해 각 투입인력에 대해 경력 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을 각각 첨부하여 제출한다.

입찰 참가제한 또는 부정당업자 지정내용

처분종류	업 체 명	입찰 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 받은 기간(월)	사 유	비 고
		년 월 일 ~ 년 월 일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월)		

가점 및 감점

구 분		해 당 내 용
가점	없음	해당 없음
감점	누계부실평균 부실별점	☐ 사업참여업체명 : ○ 누계부실평균부실별점 : ○ 점 ☐ 사업참여자 성명 : ○ 누계부실평균부실별점 : ○ 점

※ 확인가능 증빙서류 첨부,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기재



○○○○○○○○○○○ 용역

사업수행계획서

2022. . .

○○○○○○○

목 차

1. 사 업 명	
2. 사업기간	
3. 사업목적	
4. 사업범위	
5. 사업추진체계	
6. 사업추진절차	
7. 산출물계획	
8. 일정계획	
9. 공정별 투입인력계획	
10. 보고계획	
11. 표준화계획	
12. 품질보증계획	
13. 위험관리계획	
14. 보안대책	
15. 교육계획	
16. 발주기관 협조요청사항	

- 75 -

1. 사 업 명

◎ 작성요령 : 계약서상의 사업명을 기입

2. 사업기간

◎ 작성요령 :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을 기입

3. 사업목적

◎ 작성요령 : 제안요청서상의 과제의 추진배경 및 목적을 기입

4. 사업범위

가. 개발대상업무

◎ 작성요령 : 제안요청서상의 업무범위를 근거로 작성

나. 개발 및 운영환경

◎ 작성요령 :
 -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 기타로 나누어 기술적인 사항을 개발기간 중과 개발 후 운영 단계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기술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기술

다. 기 타

◎ 작성요령 : 인터페이스 관련사항, 표준화, 업무절차재구축, 초기자료구축 등 가, 나에 기술되지는 않았지만 업무의 범위를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기술

5. 사업추진체계

가. 총괄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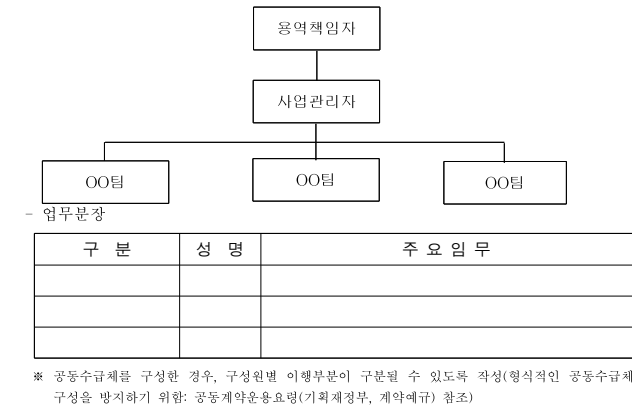
◎ 작성요령 : 제안요청서를 근거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하되 발주기관의 감사 및 감독 담당자가 명시되어야 함

- 76 -

나. 사업자 추진체계

- 사업자 조직도

◎ 작성요령 :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경우 컨소시엄간 역할 및 업무분장이 명시되어야 함
※ 분리발주된 SW공급자와의 협력방안을 기술



- 참여인력 총괄표 (‘인력투입방식’에 의한 계약부분에 대해서만 작성)

◎ 작성요령 :
- 참여인력 총괄표의 참여인력은 주사업자를 비롯한 컨소시엄 참여업체 및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라 승인을 받은 하도급 업체에 한함

성 명	소 속	담당업무	등급(투입율)	총투입M/M

※ 투입율은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를 원칙으로 함
※ 총투입M/M는 투입율 * 사업기간(월)으로 산정함

6. 사업추진절차

단계명 (phase)	세그먼트명 (segment)	단위업무명 (task)	수 행 업 무	산 출 물	비 고

※ 기술용역개발사업의 경우 개발방법론을 사용한다.

7. 산출물계획

◎ 작성요령
- 산출물을 명기하고 산출물 제출일정, 제출부수 등의 제출계획을 기술

8. 일정계획

구 분	M				M+1				M+2												M+n				비 고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 작성요령 : 구분은 단위업무(task)를 기입
- 주간단위로 작성하며, 기간은 막대형태로 표기

9. 공정별 투입인력계획

(단위 : M/M)

작업단계명 (TASK)	시작일~ 종료일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고급 기능사	중급 기능사	초급 기능사	계
	계								
비고									

◎ 작성요령 :
- 사업자가 투입인력계획을 제안서에 명시한 사업의 경우 작성
- 세로(작업단계별)계 : 투입등급별 M/M 합계
- 가로(투입등급별)계 = 작업단계별 M/M 합계

10. 보고계획

◎ 작성요령 : 주간, 월간, 단계별 보고를 포함하여 품질보증활동보고, 위험관리현황보고 등 전체적인 보고계획을 수립

11. 표준화계획

1) 표준화 항목

◎ 작성요령 : 아래 표준화 항목에 맞는 사업수행내역을 내역란에 기술
- 해당항목에 대한 사업수행내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으로 명시

구분	항 목		내 역
행정 업무표준	업무	업무처리 절차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항목	
	정보 (데이터/ 코드)	업무용 코드/행정업무용 표준코드	
		각종 서식	
		정보공동활용에 필요한 연계 정보항목 및 연계 절차	
	사업 관리	사업 관리, 유지보수, 평가 등에 대한 지침 및 규정	
공통 서비스	공통서비스 대상발급		
	사용자디렉토리 (LDAP)		
	통합인증		
	민원안내		
	민원발급		
	민원서식		
	전자지불		
	본인확인		
	웹서비스 등록자장소 (UDD)		
	단방향문자서비스 (SMS)		

2) 정보화기반표준

◎ 작성요령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상호운용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기술평가 검토서식**을 작성·제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고 준수

3)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 작성요령 :
- 공공기관의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20호, ‘19.3.265)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

4)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 작성요령 :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26호, ‘17.12.29)에 따른 웹호환성 확보에 대한 준수계획을 서술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0(TTA, 2009.12.22)을 참조하여 콘텐츠 제작시 활용

12. 품질관리계획

◎ 작성요령 : 품질목표, 추진체계, 내용, 품질보증절차 등을 제시

13. 위험관리계획

◎ 작성요령 : 위험관리목표, 추진체계, 절차 등을 제시

14. 보안대책

◎ 작성요령 : 생성된 문서의 보관, 통신보안, 시스템 보안 등의 보안대책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제시(개발자 교육, 사규어 코드 및 보안취약점 진단·보완조치 등)

15. 교육계획

◎ 작성요령 : 사업 완료이전, 이후를 포함한 모든 제공 교육에 대한 과목, 일정, 대상, 기간, 교육내용 및 지원사항을 기술

16. 발주기관 협조요청사항

◎ 작성요령 : 사업자의 입장에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중 발주기관에서 조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예 : 출입조치, 작업장소, 자료조사협조 등)

보안서약서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나는 00000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명	인
	서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명	인

[붙임 13]

청렴계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 83 -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귀하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협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협약합니다.

2022.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